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9호 2018. 2. 19(월)

선 람	기관의 장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8- 2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	1
○남원시 공고 제2018- 281호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23
○남원시 공고 제2018- 29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인월면) -----	32
○남원시 공고 제2018- 293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33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8-2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2월 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교통 대로 개설공사[2구간]	남원시 향교동	도로	대로	1-2	향교동 123-4 ~ 향교동 162	L=200m B=35m	2018. 2	2018. 12	남원시	
		도로	대로	3-5	향교동 276-7 ~ 향교동 124-1	L=260m B=25m	2018. 2	2018. 12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교통 대로 개설공사[2구간]

□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향교	86-4	86-4	철	68	68		국 (국토교통부)				
2	"	91-4	91-4	답	666	66		남원시				
3	"	91-5	91-5	철	98	98		국 (국토교통부)				
4	"	92-6	92-6	답	802	802		남원시				
5	"	122-16	122-16	대	18	18		남원시				
6	"	123-7	123-7	도	60	8		남원시				
7	"	123-13	123-13	도	108	108		남원시				
8	"	123-22	123-22	전	74	74		남원시				
9	"	123-25	123-25	도	344	120		남원시				
10	"	123-26	123-26	대	116	116		남원시				
11	"	123-27	123-27	대	53	53		남원시				
12	"	123-28	123-28	답	765	765		남원시				
13	"	123-29	123-29	대	88	88		남원시				
14	"	123-30	123-30	답	142	142		남원시				
15	"	123-31	123-31	답	12	12		남원시				
16	"	124-3	124-3	구	36	36		국 (농림수산부)				
17	"	124-18	124-18	대	2	2	향교동 124-4	김이순				
18	"	124-19	124-19	대	89	89		남원시				
19	"	124-20	124-20	답	1,900	1,900		남원시				
20	"	124-21	124-21	답	339	339		남원시				
21	"	125-4	125-4	구	255	66		국 (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22	"	125-7	125-7	철	264	264		국 (국토교통부)				
23	"	125-8	125-8	답	47	47		남원시				
24	"	126-15	126-15	답	141	141		남원시				
25	"	126-32	126-32	답	6	6		남원시				
26	"	126-33	126-33	답	112	112		남원시				
27	"	126-34	126-34	대	82	82		남원시				
28	"	126-35	126-35	대	56	56		남원시				
29	"	126-36	126-36	대	148	148		남원시				
30	"	135-13	135-13	답	792	792		남원시				
31	"	149-4	149-4	답	107	107		남원시				
32	"	154-1	154-1	구	13	13		국 (농림수산부)				
33	"	154-5	154-5	답	617	617		남원시				
34	"	154-8	154-8	답	684	684		남원시				
35	"	155-3	155-3	구	66	44		국 (농림수산부)				
36	"	155-4	155-4	답	102	102		남원시				
37	"	156-2	156-2	구	30	30		국 (농림수산부)				
38	"	156-3	156-3	전	1,297	1,297		남원시				
39	"	156-4	156-4	도	55	55		남원시				
40	"	157-4	157-4	대	32	32		남원시				
41	"	162	162	답	90	90		남원시				
42	"	266-11	266-11	대	5	5		남원시				
43	"	268-1	268-1	대	132	132		남원시				
44	"	268-3	268-3	구	149	149		국 (농림수산부)				
45	"	268-5	268-5	대	17	17	향교동 278-1	장 포				
46	"	268-9	268-9	대	74	74		남원시				
47	"	269-1	269-1	구	13	13		국 (농림수산부)				
48	"	269-15	269-15	대	10	10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49	"	270-2	270-2	구	182	89		국 (농림수산부)				
50	"	270-14	270-14	대	82	82		남원시				
51	"	270-16	270-16	대	265	265		남원시				
52	"	270-17	270-17	대	9	9		남원시				
53	"	270-18	270-18	대	83	83		남원시				
54	"	270-19	270-19	대	121	121		남원시				
55	"	271-6	271-6	대	48	48		남원시				
56	"	271-7	271-7	대	393	393		남원시				
57	"	274-2	274-2	구	56	56		국 (농림수산부)				
58	"	274-6	274-6	대	43	43		남원시				
59	"	274-7	274-7	대	144	144		남원시				
60	"	275-1	275-1	구	145	145		국 (농림수산부)				
61	"	275-16	275-16	도	85	85		남원시				
62	"	275-17	275-17	도	14	14		남원시				
63	"	275-18	275-18	대	90	90		남원시				
64	"	275-19	275-19	대	28	28	향교동 276-6	강성근				
65	"	276-5	276-5	구	264	194		국 (농림수산부)				
66	"	276-6	276-6	대	149	149	향교동 276-6	강성근				
67	"	276-7	276-7	대	185	185		남원시				
68	"	276-8	276-8	대	69	69		남원시				
69	"	276-11	276-11	대	4	4	향교동 276-1	이주환				
70	"	991	991	도	248	76		국 (국토교통부)				
71	"	992	992	구	326	62		국 (농림수산부)				
72	"	995	995	구	558	133		국 (농림수산부)				
73	"	995-21	995-21	구	106	49		국 (농림수산부)				
74	"	989	989	도	2,612	4		남원시				
75	"	135-4	135-4	도	171	116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총 계				17,656	13,425						

물 건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향교	276-8	상가	조적조, 스라브지붕	39.06	m ²						
			부속건물	블록조, 스레트지붕	60.90	m ²						
소계			2건					남원시				
2	향교	276-8	영업보상	미앤헤어클릭	1	식						
				간판 등	5	식						
				에어컨	2	식						
				온수기	1	식						
				기타 영업시설	1	식						
소계			5건					남원시				
3	향교	275-14	주택(1층)	연와조, 스라브지붕	93.07	m ²						
			주택(2층)	연와조, 스라브지붕	61.97	m ²						
			2층화장실		6	m ²						
			까대기1 (주택1)		8.8	m ²						
			까대기2 (주택2)		10.92	m ²						
			지하실		12	m ²						
			보일러실		4.08	m ²						
			창고1		9.80	m ²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까대기3 (창고1)		5.0	m ²						
			창고2		14.04	m ²						
			담장1		5	m						
			담장2		11	m						
			계단		4	식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바닥포장		40	m ²						
			화단		1	식						
			향나무		2	주						
			감나무		1	주						
			남천		1	속						
			목단		1	주						
			철쭉		1	주						
			노간주나무		1	주						
			회양목		1	주						
			으름나무		1	주						
소계			24건					강성근				
4	향교	275-8	주택1	목조, 기와 (강판)지붕	72.48	m ²						
			까대기1 (주택1)		6.24	m ²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주택2	조적조, 스라브	18.72	㎡						
			주택2 (옷방)	조적조, 스라브	7.80	㎡						
			보일러실1 (주택1)		1	식						
			보일러실2 (주택2)		1	식						
			계단	철재, 콘크리트	2	식						
			창고	조적조, 스라브 스레트 지붕	14.91	㎡						
			대문		1	식						
			담장		10	m						
			바닥포장		14.0	㎡						
			화단		1	식						
			주목		2	주						
			개나리나무		1	주						
			감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향나무		2	주						
			명자나무		2	주						
			은행나무		1	주						
			철쭉		1	주						
			라일락		1	주						
소계			21건					남원시				
5	향교	268-4	주택		46.75	㎡						
			창고		3.5	㎡						
			화장실		3.74	㎡						
			수도간		1	식						
			대문		1	식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바닥포장		12.0	m ²						
소계			6건					남원시				
6	향교	269-15	담장		3.0	m						
			대문		1	식						
소계			2건					남원시				
7	향교	276-11	현관	샤시유리	3.30	m ²						
			까대기1 (천장)		7.98	m ²						
			창고및화 장실	조적조, 스라브 지붕	17.70	m ²						
			까대기2 (창고)		6.49	m ²						
			창고	목조, 강판지붕	5.20	m ²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계단		2	식						
			담장		15	m						
			굴뚝		1	식						
			화단		1	식						
			매실나무		1	주						
			바닥포장		4	m ²						
소계			12건					이주환				
8	향교	274-6	창고1	블록조 스레트지붕	16.5	m ²						
			창고2	블록조 스레트지붕	30.0	m ²						
			담		1	m						
			대문		1	식						
소계			4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9	향교	274-4	주택1	목조, 강판기와지붕	54.99	㎡						
			까대기1		7.4	㎡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5.72	㎡						
			주택2		26.4	㎡						
			까대기2		3.0	㎡						
			보일러실		5.0	㎡						
			바닥포장		28.0	㎡						
			담장		27.4	m						
			대문		1	식						
			화단		1	식						
			동백나무		1	주						
			감나무		2	주						
			향나무		1	주						
			철쭉		2	주						
			고욤나무		1	주						
소계			15건					남원시				
10	향교	270-7 270-14	주택1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72.80	㎡						
			까대기1 (주택1)		14.20	㎡						
			까대기2 (주택1)		10.20	㎡						
			주택2		18.46	㎡						
			2층주택		62.96	㎡						
			2층 보일러실		4.0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2층심야 보일러실		4.0	m ²						
			심야 보일러		1	식						
			까대기3 (2층주택)		13.80	m ²						
			계단	철재, 콘크리트	2	식						
			비닐하우스	차광막	1	식						
			차양		1	식						
			까대기4		4.40	m ²						
			담장		11	m						
			대문		1	식						
			바닥포장		20.0	m ²						
			화단		2	식						
			주목		3	주						
			향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철쭉		11	주						
			회양목		5	주						
			아로니아		1	주						
			소철		1	주						
			깡깡나무		1	주						
			이팝나무		1	주						
			능소화		1	주						
			라일락		1	주						
소계			28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11	향교	270-1 270-8	주택1	목조, 시멘트	43.46	m ²						
			차양		13.35	m ²						
			까대기1 (주택1)		6.0	m ²						
			주택2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81.4	m ²						
			창고1		31.48	m ²						
			화장실 및 창고		5.25	m ²						
			대문		2	식						
			담장1		3.0	m						
			바닥포장		40.0	m ²						
			장독대		1	식						
			장미		1	주						
			목단		1	주						
			감나무		2	주						
			기타나무		1	주						
			담장2		28.6	m						
			창고2		8.55	m ²						
소계			16건					남원시				
12	향교	271-7	작업장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150	m ²						
			담장		25.5	m						
			대문		1	식						
			동산(적 치물)이 전비		1	식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건사		3	식						
			계사		3	식						
			무궁화		1	주						
			두릅		5	주						
			단풍나무		3	주						
			모과나무		1	주						
			중국단풍		7	주						
			동백나무		3	주						
			기타나무	꾸지뽕, 병나무 등	5	주						
			주목		9	주						
			감나무		8	주						
			호두나무		2	주						
			대추나무		6	주						
			금목서		1	주						
			매실나무		2	주						
			향나무		4	주						
			백일홍		2	주						
			무화과나무		2	주						
			노간주나무		1	주						
			측백나무		1	주						
			은행나무		7	주						
			괭괭나무		1	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남천		1	주						
			소나무		3	주						
			앵두나무		1	주						
			석류나무		1	주						
			호랑가시		1	주						
			석등		1	식						
소계			32건					남원시				
13	향교	271-6	담장		6	m						
소계			1건					남원시				
14	향교	135-1	창고	PC구조	18.0	m ²						
			관정	전기시설포함	1	식						
소계			2건					남원시				
15	향교	135-13	컨테이너		1	식						
			소나무		89	주						
			가시오가피		6	주						
			화살나무		2	주						
			느티나무		2	주						
			팽나무		1	주						
			복숭아나무		2	주						
			단풍나무		2	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주목		1	주						
			측백나무		2	주						
			철쭉		20	주						
소계			11건					남원시				
16	향교	123-28	작업장		8.40	m ²						
			철지주		1	식						
			소나무		3	주						
			매실나무		6	주						
			자두나무		1	주						
소계			5건					남원시				
17	향교	122-16	창고 및 화장실	블록조 스라브지붕	10.20	m ²						
			담장		2.8	m						
			대문		1	식						
소계			3건					이공례				
18	향교	126-9	주택1층	적벽돌 스라브지붕	78.72	m ²						
			까대기1 (1층)		19.56	m ²						
			까대기2 (2층)		24.32	m ²						
			주택2층	벽돌+슬래브	78.72	m ²						
			계단실 및 보일러실		1	식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창고	조적조 스라브	1	식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담장		12.8	m						
			옥탑	조적조 스라브	10.0	m ²						
			대추나무		1	주						
			매실나무		1	주						
			철쭉		4	주						
			감나무		3	주						
			동백나무		1	주						
소계			14건					남원시				
19	향교	126-7	주택	스라브위강판	94.23	m ²						
			옥상 (강판)		136.97	m ²						
			까데기1		7.84	m ²						
			까데기2		12.96	m ²						
			화장실		3.22	m ²						
			까데기		18.9	m ²						
			수도간		1	식						
			계단		1	식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바닥포장		16.75	m ²						
			화단	자연석	1	식						
			포도나무	덕시설	2	주						
소계			12건					남원시				
20	향교	123-11	주택	벽돌조 강판기와지붕	66.6	m ²						
			까대기1		11.1	m ²						
			까대기2		14.4	m ²						
			까대기3		14.7	m ²						
			화장실및 창고		9.24	m ²						
			창고		3.9	m ²						
			담장		20	m						
			바닥포장		40	m ²						
			대문		1	식						
			화단		1	식						
			향나무		1	주						
			목단		1	주						
			병꽃나무		1	주						
소계			13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21	향교	123-31	바닥포장		12	m ²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소계			2건					남원시				
22	향교	123-15	주택	목조, 세와지붕	88.9	m ²						
			까데기		17.17	m ²						
			주택2	블록조 스라브지붕	39.9	m ²						
			창고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11.13	m ²						
			담장		24.1	m						
			대문	스라브 문간포함	1	식						
			바닥포장		29.0	m ²						
			정화조		1	식						
			화단		2	식						
			소나무		3	주						
			회양목		3	주						
			철쭉		2	주						
			향나무		1	주						
			석류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보리수나무		1	주						
			기타나무	병나무, 능소화, 화살나무	3	주						
			계단		1	식						
소계			18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23	향교	124-18	까데기 (부역)		2.25	m ²						
소계			1건					김이순				
24	향교	123-22	화장실및 창고		12.5	m ²						
			까데기		11.25	m ²						
			컨테이너	이전비	1	식						
			바닥포장		24.0	m ²						
			담장		4.8	m						
			양봉		10	군						
			수도간		1	식						
			화단		1	식						
			사과나무		1	주						
			보리수나무		1	주						
			엄나무		1	주						
			약나무		2	주						
			작약		1	주						
소계			13건					남원시				
25	향교	123-26	주택1	시멘트벽돌조기와지붕	61.04	m ²						
			까데기1		32.20	m ²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까데기2		2.94	m ²						
			까데기3		17.0	m ²						
			담장		10	m						
			화단	자연석	1	식						
			동백나무		5	주						
			목단		1	주						
			철쭉		4	주						
			소철		2	주						
			능수화		1	주						
소계			11건					남원시				
26	향교	154-8	사무실 (현관)	경량철골조립식	2.73	m ²						
			까데기		7.47	m ²						
			작업장		50	m ²						
			창고		2.42	m ²						
			영업보상	한일석물공예사	1	식						
			간판		3	식						
			석재 (이설비)		1	식						
			기타작업 설비	콤프레샤 등	1	식						
			바닥포장		300	m ²						
소계			9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27	향교	154-5 154-3	영업보상	오토모빌워크샵	1	식						
			간판		3	식						
			리프트 (차량)		1	식						
			기타영업 설비		1	식						
소계			4건					남원시				
28	향교	154-5	작업장	스레트지붕	50.4	m ²						
			화장실	조립식	2.55	m ²						
			바닥포장		580	m ²						
소계			3건					남원시				
29	향교	156-3	창고		30.53	m ²						
			컨테이너		1	식						
			화장실		1	식						
			영업보상	대왕고물상	1	식						
			간판		2	식						
			계근대		1	식						
			재고 고철등		1	식						
			담장		60	m						
소계			8건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30	향교	156-3	컨테이너 (주택)및 화장실		19.80	m ²						
			간판	토종감자국수	1	식						
소계			2건					남원시				
31	향교	157-4	컨테이너 (이설)		1	식						
			간판	신한모터스 춘향종합폐차장	2	식						
			담장		12	m						
소계			3건					남원시				
32	향교	157-4	간판 지주대	3각	1	식						
			간판	신성적재함	3	식						
			간판	TEROSON, 3M선팅 자동차용품	4	식						
			무궁화		4	주						
소계			4건					3M선팅				
33	향교	92-6	관정	농업용	1	식		남원시				
34	향교	125-5	관정	농업용	1	식		남원시				
합계		34건										

남원시 공고 제2018 - 281호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중 자살예방정책수립을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안 제4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명칭 변경 및 관련 법조항 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변경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건강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건강생활과장)

- 우편번호 : 55766

- 주 소 : 남원시 요천로 1285(조산동, 남원시 보건소)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정신건강담당(☎063-620-7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생활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중 자살예방정책수립을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안 제4조)
-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명칭 변경 및 관련 법조항 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변경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19. ~ 2018. 3. 11.(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 시책”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를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p> <p>②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p> <p>③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p> <p>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삭 제></p>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 2.·3. (생략)
4. 우울증,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 7.·8.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 2.·3. (현행과 같음)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삭제>
<삭제>
- 7.·8.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시행계획-----

2. ~ 4. (현행과 같음)

③ -----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남원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
하게 하거나, 센터를 「정신보
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
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
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에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
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
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공고 제2018-29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남 원 시



□ 공인 신조 등록 [인월면]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등록 일 : 2018. 2. 1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인 월면장인 인증기전용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인월면

□ 공인 폐기 [인월면]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마모
2. 공인 폐 기 일 : 2018. 2. 1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원시인 월면장인 인증기전용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인월면

남원시 공고 제2018 - 293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 (안 제14조, 안 별표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이상” → “3퍼센트 이상”

다. 노외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

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063-620-6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 (안 제14조, 안 별표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이상” → “3퍼센트 이상”
- 다. 노외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
- 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 ~ 2018. 2.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차장 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별표 3 비고 중 제10호,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건축허가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부설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

- 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 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 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u>규칙</u>”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u>실태조사</u>”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②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u>주차장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p>	<p>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 ----- “<u>시행규칙</u>”----- ----- ----- ----- -----.</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u></p> <p>① <u>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u></p> <p>② <u>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한다.</u></p> <p>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u>주차장법시행령</u>」----- ----- -----</p>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제14조 별표 3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 건물안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 설치
-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삭 제>

<삭 제>

<삭 제>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신 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산금을 징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